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376 발의연월일: 2024. 12. 10.

발 의 자:이해식・박상혁・서영교

서영석 • 한병도 • 천준호

황명선 • 복기왕 • 염태영

정준호 · 이재명 · 정을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폭염피해 예방조직의 정비, 지역 별 폭염대책 마련 등의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도록 하며,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폭염으로 생명·재산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폭염피해가 반복하여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중장기적인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집중적인 대책 마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은 폭염으로 인하여 온열질환사상자가 발생하거나 농작물, 수산양식물 피해가 발생하는 등 폭염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폭염피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상습폭염피해지역에 대하여 폭염피해예방시설의 설치·운영 등 폭염피해의 예방 및 경감을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시행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4 및 제33조의5 신설 등).

법률 제 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 앞의 "제7절 한파"를 삭제한다.

제33조의4 및 제33조의5를 각각 제33조의6 및 제33조의7로 하고, 제33조의6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절 한파

제2장제6절에 제33조의4 및 제33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3조의4(상습폭염피해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폭염으로 인하여 온열질환사상자가 발생하거나 농작물, 수산양식물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폭염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폭염피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과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습폭염피해지역을 지정하려면 그 지역 공공시설물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폭염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폭염피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해당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의5제1항에 따른 중장기대책 시행 등으로 폭염피해의 위험이 없어졌으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습폭염피해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한다.
- ⑤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상습폭염피해지역의 지정 및 해제의 요건, 절차, 관리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3조의5(상습폭염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① 제33조의4제1항에 따른 상습폭염피해지역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지역 공공시설물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폭염피해예방시설의설치·운영 등 폭염피해의 예방 및 경감을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대책의 수립 절차, 중장기대책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및 그 밖에 중장기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상습폭염피해지역 내 공공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중 장기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 고, 요구를 받은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중장기대책의 수립 및 시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절 한파	<u><</u> 삭 제>
<u><신 설></u>	제33조의4(상습폭염피해지역의
	<u>지정 등) ① 시장·군수·구청</u>
	<u>장은 폭염으로 인하여 온열질</u>
	환사상자가 발생하거나 농작물,
	수산양식물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폭염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폭염피해지역
	으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
	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
	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
	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u>항에 따라 상습폭염피해지역을</u>
	지정하려면 그 지역 공공시설
	물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의 장
	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

청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폭염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폭염피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해당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 조의5제1항에 따른 중장기대책 시행 등으로 폭염피해의 위험 이 없어졌으면 관계 전문가 등 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습폭염 피해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상습 폭염피해지역의 지정 및 해제 의 요건, 절차, 관리 방법에 관 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5(상습폭염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① 제33조의 4제1항에 따른 상습폭염피해지역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지역 공공시설물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폭염피해예방시설의 설치·운영

<신 설>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제1하에 따르 주자기대채의

등 폭염피해의 예방 및 경감을

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대책의 수립 절차, 중장기대책에 포함 되어야 할 사항 및 그 밖에 중 장기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습폭염피해 지역 내 공공시설물의 관리주 체가 중장기대책을 수립할 때 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 하면 제1항에 따른 중장기대책 의 수립 및 시행 실태를 점검 할 수 있다.

<u>제7절 한파</u>

제33조의6(한파피해 예방 및 경 감 조치) (현행 제33조의4와 같 음)

 <U 설>

 제33조의4(한파피해 예방 및 경

 감 조치) (생 략)

제33조의5(한파피해 예방을 위한제33조의7(한파피해 예방을 위한조사・연구)(생 략)조사・연구)(현행 제33조의5와같음)